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7

발의연월일: 2020. 12. 18.

발 의 자 : 김영배 · 정청래 · 앙이원영

주철현 • 이용우 • 이형석

전혜숙 • 한병도 • 이해식

이명수・양기대・서영교

의원(12인)

제안 이유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보궐선거를 이용한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고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공정선거정착 및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가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기재사항에서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함(안 제8조, 제55조). 나. 재선거로 선출된 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명시함(안 제16조 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대의원 중 일부 또는 임원 중 일부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 재선거로 선임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 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함.

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제1항, 제20조제3항 신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함.

- 라.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11호의2·11호의3 신설).
 - 1)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신설)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 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만,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 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바. 금고가 보유자산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제20조제1항 본문 중 "이사"를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및 이사 중 일부 또는 감사 중 일부 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제1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제3호부터 제 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으로 한다.
 -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의2 중 "제21조제1항제8호"를 "제21조제1항제8호·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금고는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 는 행위
-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 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 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 다.
-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 의금품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한 경우(해당 금고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 다)
- 2.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2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보유자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54조제4항 중 "제53조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제3항·제5항"를 "제53 조까지"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8조제6항 전단 중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을 "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의2제6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20조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로, "제22조"를 "제22조, 제2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5조제6항"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후단 및 제22조의2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고,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3항"을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제3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중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22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제 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재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64 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 중 퇴임하거나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이사장 선거에서 선임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행위에 관한 벌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금고의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사무소</u> 의 소재지	3. <u>주된 사무소</u>	
4.~11. (생 략)	4.~11. (현행과 같음)	
제16조(대의원회) ①·② (생 략)	제16조(대의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	
	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	
	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	
	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	
	<u>자의 남은 임기</u>	
<u>③</u> ~ <u>⑤</u> (생 략)	$\underline{4} \sim \underline{6}$ (현행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와 같음)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u>이사</u> 의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u>이사장,</u>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u>부이사장 및 이사</u>	
임기는 3년으로 한다. <u>다만, 이</u>	<단서 삭	

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 제> 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자리가 빈 경우 보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장 및 이사 중 일부 또는 감 사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 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 자의 남은 임기
 -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 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 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 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 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1. (생 략) <신 설>

<신 설>

12.~18. (생략)

-----.

1.~11. (현행과 같음)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 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는 제외하며, 제257조의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1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합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③ (현행과 같음)
4
<u>স</u>
<u>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 11</u>
호의2 및 제11호의3
<u>.</u>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u>제21조제1항제8호·제11호</u>
<u>의2 또는 제11호의3</u>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후보
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배
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
일 전 180일(재선거 또는 보궐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 단체·시설(나목에 따른 금고는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 는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 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 를 포함한다)

-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
 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
 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을 그 기관·단체·시
 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
 위(포상 및 화환·화분 제
 공 행위를 포함한다)
-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 (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 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 하는 행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 공하는 행위

<u>2</u>. 의례적 행위

-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 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 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

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 금품(화환·화분을 포함한 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 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 客) 등에게 통상적인 범 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 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
단체·시설(후보자가 임원
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
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

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

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
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
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
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
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다니는 교회·성당·사찰등에 통상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 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 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 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 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 부행위로 본다.

-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1.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 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 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 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 로 한 경우(해당 금고 이사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 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현행과 같음)
 - ⑦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 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⑥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⑥ (생 략)

<신 설>

- 제54조(목적과 설립) ①~③ (생략)
 -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제3항, 제7조의2, 제45조 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4조의3제2 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다.
-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중앙 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2. (생략)
 - 3. <u>사무소</u>의 소재지 4.∼11. (생 략)

제58조(총회) ①~⑤ (생 략)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 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u>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을</u>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고 .	<u>보유자산의</u>	일무들	<u>타인에</u>
게 약	임대할 수 9	있다.	
제54조	(목적과 설	립) ①~	③ (현
행과	같음)		
4 -			
<u>제53</u>	<u> 조까지</u>		
제55조	(정관의 기	재 사항)	
12.	(현행과 길	같음)	
3. <u>주</u>	된 사무소		· _ _
$4.\sim$	11. (현행과	같음)	
제58조	(총회) ①~	~⑤ (현	행과 같
음)			
6 -			
		제16조	제1항부
터 :	제4항까지 :	제 <u>6항</u>	.
제64조	의2(임원의	선출고	나 임기

- 등) ①~⑤ (생 략) 등) ①~⑤ (현행과 같음)
-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 부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⑦~⑩ (생 략) 제67조(사업) ①~③ (생 략) 제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u>제28조</u>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3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 다.

⑤·⑥ (생 략) 제85조(벌칙) ①·② (생 략)

6
<u>제20</u> 조제3항 후단, 제2 <u>1</u>
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
<u>지·제11호의2·제11호의3·제12</u>
<u>호</u> <u>제22</u>
조, 제22조의2
<u>제20</u>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
<u>항 후단 및 제22조의2제6항</u>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보
고, 제25조제6항
<u>.</u>
⑦∼⑩ (현행과 같음)
제67조(사업) ①~③ (현행과 같
승)
④ <u>제28조</u>
<u>제1항제2호·제4호, 제3항 및</u>
제7항
⑤·⑥ (현행과 같음)
제85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u></u>
③ 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64	③ <u>제22</u> 조제2항·제3항 및 제22
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	조의2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